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

2014 년 12 월

서울재팬클럽(SJC)

목 차

서문.....	1
중요과제.....	3
요약.....	6

본 문

1. 노동 분야(4 개 항목)	23
계속 4 개 항목	
2. 세무 분야(10 개 항목)	29
신규 6 개 항목, 계속 4 개 항목	
3. 금융 분야(9 개 항목)	39
신규 5 개 항목, 계속 4 개 항목	
4. 지식재산 분야(19 개 항목)	48
신규 4 개 항목, 계속 15 개 항목	
5. 산업 분야(10 개 항목)	70
신규 8 개 항목, 계속 2 개 항목	
6. 개별요망사항(6 개 항목)	80
신규 6 개 항목	

총 58 개 항목 (신규 29 개, 계속 29 개 항목)

서 문

한일 수교 이후 일본 기업은 누적 354억 달러 이상의 대한직접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업종과 업태는 변화하면서도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신고 기준으로 연간 26억 달러를 넘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투자환경 정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배려를 해주셨기에 실현될 수 있었으며 서울재팬클럽(SJC)으로서도 오랜 기간 힘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SJC는 1998년부터 해마다 투자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비즈니스상의 애로사항으로 정리하여 건의 형태로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사항에 대응해 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2014년을 ‘규제 개혁의 해’로 정하여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SJC는 관계부처·KOTRA 등과 다방면의 의견교환 기회를 가졌습니다. SJC는 양국간 경제적 연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제 17차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답변과 함께 개선을 위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일 경제관계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경제적 연계를 심화시키고 보다 광범위한 업종·업계에서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규정에 따른 경제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보다 정밀한 제도와 그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사항 제출과 관련하여 SJC는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널리 의견을 수집함과 동시에 회신해 주신 답변·개선내용을 회원기업뿐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일본 기업에게 알리는 것이 양국 경제관계의 확대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사항에서는 노동, 세무, 금융, 지식재산, 산업, 개별안건에서 총 58개 항목(신규 29건, 계속 29건)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이하의 7건입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노동)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폐지(노동)
3.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 및 관세조사(세무)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제도의 개선(세무)
5.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금융)
6.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지식재산)
7. K마크, ECO마크 인증제도의 재검토(산업)

고용의 유동성·다양성을 통한 근로자·고용자 간의 win-win 체제 구축(상기 1, 2), 세무·금융제도의 탄력적 운용 실현(상기 3~5), 정당한 특허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환경정비(상기 6), 각종 인증제도의 재검토(상기 7)는 모두 한일이 함께 협력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R&D 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거분을 소급하여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등의 때에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거분을 소급적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경과조치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술력 있는 한일 기업의 연계를 위해 지식재산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 본 항에 관해서는 제도의 고도화를 염두에 둔 사법·행정의 다방면에 걸친 건의사항이어서 건수가 많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JC 도 일본 기업의 대한직접투자 및 한일무역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환경정비의 기초가 될 본 건의사항의 개선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 년 12 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이시야마 히로쓰구(石山 博嗣)

2014 년 건의사항 중요과제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법령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2013 년 12 월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지금까지 운용해 온 통상임금 산정지침과는 다른 판결(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가 증대되는 사태는 용인할 수 없으므로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용해 왔던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취지(상여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법령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과거의 임금 미지급분 취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통상임금 산정지침대로 대응해 온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폐지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등의 합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JC 가 매년 실시하는 노동 설문조사에서도 ‘취업규칙의 개정내용이 합리적일지라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회사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귀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에도 차질이 생기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만이 담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및 동조 제 2 항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폐지와 이를 대신할 판단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망합니다.

3.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 및 관세조사

귀 정부는 안전보장 및 복지예산(5년간 134조 원)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인력을 증원(500명 추가)하여 이전가격 등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 외환거래 및 수출입 통관요건 관련 분야의 비정기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대상기업은 예년에 비해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세금추징을 당하거나 통상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보다 구체적인 조사목적(항목)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과세한 후에 불만이 있으면 납세자가 불복하라는 자세보다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에게 조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제도의 개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가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한 경정청구(2~3건)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환급을 담당하는 두 관청(국세청, 관세청)의 정상가격 계산방법이 상이하여 환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의 정상가격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경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격조정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령에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로 환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

외국은행 지점의 자금조달은 주로 외화차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안정자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해외 본·지점으로부터의 조달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에는 안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지점으로부터의 차입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자금조달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할 뿐 아니라 대출대상인 일반기업과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율에 전가되기 쉬운 점 등으로 인해 산업계, 나아가 한국경제 전체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가운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높은 부담금 요율의 경감과 본·지점 차입에 대한 부담금 경감조치를 재검토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6.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

한국에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특허 무효심판에서의 높은 무효율, 낮은 배상액 등의 문제로 인해 정작 권리를 취득해도 그 권리를 유효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입증책임의 경우,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침해행위나 침해품을 입증해야 하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사건은 그 특성상 침해품을 특정할 증거나 침해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피고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원고측인 특허권자가 이를 전부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에 침해행위 입증에 위한 서류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대상에 포함시키는 특허법개정 추진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지만 문서제출명령은 이것이 거절되었을 경우의 조치를 정해놓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하며,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제도는 장기검토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권리자가 특허권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거절되었을 경우의 조치를 포함한 검토, 또한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입증책임(해당제품이나 제조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 명시 의무)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정의 검토를 요망합니다.

7. K 마크, ECO 마크 인증제도의 재검토

K 마크(또는 Q 마크)는 임의인증제도이면서 공공입찰의 조건이어서 조달기준과 입찰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가 아니라 필수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에는 K 마크를 취득한 것이 거의 없고 표시의무도 없습니다. 심사절차는 개선되고 있지만 유지를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ECO 마크도 임의인증제도이면서 공공입찰심사 시의 가산항목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녹색구매 등의 점에서 인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이 광범위하여 기업의 취득유지 비용부담이 큽니다.

K 마크(Q 마크)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조달기준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공공입찰 조건상의 기재를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마크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재검토하여 환경에 관계없는 심사기준을 수정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요망사항 요약

노동 분야 (계속 4개 항목)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 【계속/내용변경】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법령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2013년 12월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지금까지 운용해 온 통상임금 산정지침과는 다른 판결(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해석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가 증대되는 사태는 용인할 수 없으므로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용해 왔던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취지(상여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법령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과거의 임금 미지급분 취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통상임금 산정지침대로 대응해 온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줄 것을 요망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폐지 【계속/내용변경】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등의 합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SJC가 매년 실시하는 노동 설문조사에서도 ‘취업규칙의 개정내용이 합리적일지라도 동의절차가 필요하여 회사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귀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에도 차질이 생기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만이 담보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및 동조 제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폐지와 이를 대신할 판단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망한다.

3. 유급휴가 금전보상 금지 【계속/내용변경】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금전보상의 상한 설정, 각종 시책을 통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여전히 불이익 변경인 점을 이유로 제도변경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근로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휴가를 취득할 권리’라는 유급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휴가 취득을 자제하는 가치관 아래 금전보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유급휴가제도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휴가취득 촉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의 ‘휴가를 취득할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시책으로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유급휴가 금전보상제도 폐지’ 및 ‘휴가부여일수·금전보상 대상일수의 상한설정’을 불이익 변경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계속/내용변경】

귀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9 년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 주요 원인은 ①과도한 정규직 보호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 채용에 신중함 ②짧은 사용기간(2 년)으로 인해 직능향상을 도모할 수 없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택률이 높음 등 3 가지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기간 무제한인 특정 직종 설정), ‘상용고용형 파견사업의 법제도화’ (검토상황 · 일정 공개 및 실업률 개선에도 기여하는 당해사업의 법제도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세무 분야 (신규 6 개 항목, 계속 4 개 항목)

5.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 및 관세조사 【신규】

귀 정부는 안전보장 및 복지예산(5 년간 134 조 원)의 재원확보 수단의 하나로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인력을 증원(500 명 추가)하여 이전가격 등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 외환거래 및 수출입 통관요건 관련 분야의 비정기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기업은 예년에 비해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세금추징을 당하거나 통상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보다 구체적인 조사목적(항목)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또한 일단 과세한 후에 불만이 있으면 납세자가 불복하라는 자세보다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에게 조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란다.

6. 최저한세율 인상 억제 【신규】

한국의 법인세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저한세율은 인상되는 추세이다. 안전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최저한세율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욱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 최저한세율을 높여가게 되면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미래의 위험이 된다. 최저한세율의 인상을 억제해주시기 바란다.

7.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신규】

현재 국외지배주주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3 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2014 년 개정세법에서는 출자금액의 현행 3 배를 2 배로 변경하는데, 외국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은 필요한 자금을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배수변경(축소)으로 인해 세무상 지급이자 부인이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커진다.

과소자본세제의 배수를 변경하지 말고 3 배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 혹은 배수를 변경한다면 회사가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를 요망한다.

8. 로열티에 관한 손금인정 기준 【신규】

세무조사 시 로열티의 손금산입 기준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마찰이 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완성품을 수입하여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특허권에 근거한 로열티 비용을 특허소진론을 들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특허 실시(Royalty), 상표사용료를 인정해주시 바란다.

9. 관세 경정과 수정신고 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신규】

관세조사 시 수입재화의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증가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전가격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부담하는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수입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특히 과도한 규제이다.

관련법령을 보완하여 개정 것처럼 사유를 불문하고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입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10.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 【신규】

귀 정부는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그 인센티브 중 법인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 중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투자가 이루어져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감면기간 중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시 바란다.

11. 외국소재 모회사의 자산총액 산정 시 적용환산율 【계속/내용변경】

중소기업기본법 제 7 조의 2(자산총액) 제 3 항을 설립 등기일의 환율 또는 당해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쪽으로 하고 추가증자 시에는 증자자금이 은행에 납입된 날의 환율 또는 당해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쪽으로 하여, 상시 불안정한 환율 때문에 내국인 중소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1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제도 개선 【계속/내용변경】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가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한 경정청구(2-3 건)가 전부 기각되었다. 법률상으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환급을 담당하는 두 관청(국세청, 관세청)의 정상가격 계산방법이 상이하여 환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의 정상가격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경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격조정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령에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협의해주시 바란다.

13.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에 관한 과세 당국의 승인절차 신설 【계속/일부수정】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 배(금융업의 경우는 6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통상적 조건으로 조달된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과세당국의 승인절차 관련규정을 제정해주기 바란다.

14.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의 생산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취급 【계속】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위탁생산된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재고보유대리인(법인세법 시행령 제 133 조 제 1 항 1 호)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되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PE 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및 기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5 항의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장 규정의 단서로서 ‘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관련된 장소에 한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

금융 분야 (신규 5개 항목, 계속 4개 항목)

15. 교육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 도입 및 현물금융상품 거래손익과 금융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허가 【신규】

현행 교육세법은 매 분기마다 순실현이익에 0.5%의 교육세(평가이익 제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당분기에 실현될 순거래손실을 다음 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순거래이익으로 상쇄하는 시스템이 없다. 또한 현재의 교육세법상에서는 증권사 트레이딩의 주요형태가 현물상품거래와 금융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익구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손익상쇄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순거래손익에 비해 많은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 교육세법상에서의 현물상품과 금융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 상쇄의 허가 및 현행 분기별 과세를 회계기간별로 연간 단위의 과세로 하는 과세기간의 변경을 요망한다.

16.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규제 완화 【신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가사에 대한 증권사별 영업용 순자본에 대한 일반규제 이외에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에 대한 별도의 추가 위험액 한도를 규제(금융투자업 규정에 위임-자기자본의 30% 한도 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의해 장외파생상품 인가사의 경우에는 일반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 한도(150%)보다 50% 이상의 추가한도를 별도로 요구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외파생상품 거래 자체에 위험액을 별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혹독한 규제정책이며 특히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2014년 6월 30일 CCP를 통한 청산 시스템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결제위험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형태가 거래소 내 파생상품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복수의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규제 완화를 요망한다.

17.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폐지 【신규】

국내산업에 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에 필요한 원화자금 조달 시, 외국은행 지점은 외화자금을 원화자금으로 스와프하는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대비 150% 이내로 하는 본건 규제는 당해 거래에 대한 엄연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먼사태 등 과거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국내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본·지점으로부터의 차입은 단기적인 투기자금과는 달리 유동성 위기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어 왔다. 국내산업계에 대한 외은지점의 안정적인 자금공급에 의한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완화 및 폐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18. 외환과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신규】

금융기관은 외환과생상품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에 관한 리스크를 회피할 실수요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외환과생상품 거래를 할 때마다 리스크 헤지 비율이 최대 100% 이내여야 하는 규제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확인작업은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사무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고 일부 기업의 과도한 장기수출 헤지를 제한한다는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헤지 비율 확인대상을 거액거래로 한정’ 하거나 ‘사후적이고 정기적인 확인을 허용’ 하는 등 규제 운용의 완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19.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 완화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인터넷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고 금융기관이 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의 제한을 강화했다. 금융기관에 대해 보다 엄격해지는 정보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 회사가 단독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중소기업이 수탁한 경우, 재위탁처를 포함해 복수의 업무수탁회사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망한다.

①정보처리를 수탁한 자가 수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4조 ②항에 규제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재위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망한다. 또한 예외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수탁업자도 예외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수탁기업이 ISO 27001을 취득한 경우, 수탁회사의 재량으로 재위탁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감독원 규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

20. 설비자금 관련 자기자본 지불에서 외화대출 실행까지의 기간 【계속】

차주가 이미 자기자본 등으로 사전에 지불한 설비에 대한 외화대출에 관해서는 설비자금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자금으로 대응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설비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망한다. 또한 해외에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일정기간(1개월 이상) 예입하는 것을 용인해주시기 바란다.

21. 국내 외화 실수요를 위한 외화대출의 용인 【계속】

현재 해외에서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외화대출이 가능했는데, 해외에서 한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회수 통화는 외화인 경우가 많으며, 환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한국 내 지불 통화도 외화인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회수와 지불 모두 외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완결되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화지불 증빙서류가 있다면 외화차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시기 바란다.

22.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해외송금 보고시스템의 개선 【계속】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USD 1,000 이상은 송금 목적별로 한국은행과 연결된 보고시스템에 입력해야만 하며, 수입증인서의 품목코드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송금방식이 수입선불송금인 경우에는 보고시스템에 명세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고객은 실제와 다르더라도 수입선불송금으로 신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간 USD 5,000 만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은 해외송금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외환관리규정에 맞추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송금에 관해서는 명세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23.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 자금조달에 관한 규제의 완화 【계속】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차입은 그 대부분이 안정자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외 본지점으로부터의 조달이다. 2011년 8월 1일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본지점 차입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의 대폭적 상승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할 뿐 아니라 대출대상인 일반기업이나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이율에 전가되기 쉬우므로 한국경제나 산업계 전체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개선책으로서, 1)높은 부담금 요율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경감, 2)안정자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에 대한 부담금 경감 조치, 3)외국은행 지점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 등의 검토를 요망한다.

지식재산 분야 (신규 4개 항목, 계속 15개 항목)

24. 한국특허청의 정보제공 제도의 시정 【신규】

한국의 정보제공제도는 ‘정보제공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제공자가 심사관과 면담하여 정보제공 내용 및 특허성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등, 타국에는 없는 독자적인 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출원인이 감지할 수 없는 곳에서 제 3자가 거절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으며 출원인에게는 반론 자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등 타국과 비교하여 출원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이에 출원인이 유용한 발명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 제도의 주요 취지에 따라 상기의 독자적인 운용을 폐지하고 타국과 같은 운용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25.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Patent linkage)에 관한 약사법의 재검토 【신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등재의약품)의 특허권자는 후발 약제의 판매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판매 제한 중이라도 후발 약제의 품목허가취득자는 후발 약제의 약가 수재가 가능하기에 특허권 존속기간 중이라도 신약 약가 인하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후발 약제의 품목 허가 신청을 승인해서는 아니 되며 약사법 개정법률안 제 50 조 9 등의 ‘판매 제한’ 은 ‘허가 정지(Approval Stays)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26. 후발 약제의 발매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철폐 【신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신약 특허권자의 판매 제한 신청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후발 약제의 판매 제한 처분을 내려 신약 약가가 유지되고 그 후 특허 소송 또는 심판이 발생하여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판결이 났을 경우, 후발 약제의 판매제한이 없었다면 인하되었을 약가 차액분에 상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을 신약 특허권자의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징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었다(법률안 제 101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하지만 관련 약가 차액분에 상당하는 지출은 약사법 개정법률안 제 50 조의 9 제 1 항의 행정처분(판매 제한)이 원인이며 신약 품목 허가 취득자가 유지된 약가로 신약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의 또는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안의 해당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27.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규정의 재검토 【신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횟수는 특허법 89 조에서 1 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 신청 시에 신약 허가를 받은 실시양태(예를 들어 진통용 주사제)에 권리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실시양태(예를 들어 진통용 정제)의 경우, 후에 신약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약 개발에는 방대한 시간과 연구비가 필요한데 이처럼 개량된 의약제제 또는 제2의약용도 등에 각각 신약 허가를 받아 실시가능한 특허권 범위에 대해 각각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특허 보호의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이러한 의약품 개발비용투자 또는 제네릭약의 시장 투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원인이 된다.

이에 출원인이 유용한 발명정보를 공개하는 대신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 제도의 주요 취지에 맞게 상기의 독자적인 운용을 폐지하고 타국과 마찬가지로 운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즉 신약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1 번의 횟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청한다.

28.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적정화·IMD의 폐지【계속/내용변경】

임상시험기간 등 신약 특허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해당 신약의 유효성분 그 자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특허법원 2013 허 2828).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분의 일부인 염분이나 에스테르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다른 물질로 단순히 치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 후발 개량 약제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법 90 조의 연장등록출원 시에 유효성분인 염분 및 에스테르에 한정하지 않는 형태로 출원할 수 있게 하거나 법원에서 염분 및 에스테르의 차이로 개량 신약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도록 특허법 95 조의 해석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개량신약제도(IMD: 염분 및 에스테르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후발약제의약을 후발약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승인하는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29. 그린 리스트 운용의 개선【계속/내용변경】

한미 FTA 의 발효에 따라 한국약사법이 개정되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해당 제도는 원천 약제의 특허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그린 북에 등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특허권을 등재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KFDS)에서 등재 여부를 심사하여 KFDS 에서 독자적인 클레임을 작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린 북에 등재되는 등재 특허는 한국특허청이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한 특허권과 다른 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한정되어 특허권 행사가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KFDS 에서 작성한 클레임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인과 후발 약제 허가신청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의무 및 후발 약제 시판 허가가 지연되는 범위가 등록특허클레임의 범위에 근거하도록 하는 입법화를 요청한다.

30. 침해 소송에 따른 입증 책임 균형의 적정화【계속/내용변경】

한국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 측이 침해행위나 침해 물품의 입증에 해야한다는 점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사건은 그 특성 상 침해 물품을 특정할 증거나 침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원고 특허권자 측이 이를 모두 입증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작년에 침해행위의 입증에 위한 서류도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으로 삼는 특허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문서제출명령은 거부될 경우의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특허권자의 적정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권리자가 특허권 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이것이 거부될 경우의 조치도 포함하여 검토해줄 것,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입증 책임(해당 제품이나 제조방법 등의 구체적인 양태의 명시 의무)을 지게 하는 등 제도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31. 영업비밀의 보호 강화 【계속/내용변경】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유출에 대하여 민사적 및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한국 대기업 간에서조차 서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사고가 보도되고 있으며 ‘2012 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한국특허청,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기업은 34.5%에 지나지 않고 영업비밀유출이 끊이지 않는 등 일본 기업 입장에서 대한투자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징벌적배상 등을 통한 배상액 적정화 등으로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 계몽을 강화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지킨다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타사의 영업비밀도 준수해야 한다는 기업의식 육성을 요청한다.

32. 특허법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내용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CD-ROM 이나 USB 등의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만 특허법을 통한 보호 대상이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침해 제품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2014 년에 심사기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변경은 없다.

이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기 입법화 및 심사기준 재정비를 요청한다.

33.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적정화 【계속/내용변경】

한국특허법 등은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추정 규정과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정 규정이 도입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으며 실제 라이선스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전에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도 권리침해소송에서 지는 편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기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손해배상액의 인정적정화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소유자가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 해당 제출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 가능한 제도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한다.

34. 특허법에 따른 수출 보호 【계속】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수출을 권리의 실시행위로 규정하고 권리침해품 수출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특허법만 수출이 실시행위로 보호되지 않고 있어 특허발명침해품 수출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에 특허법에서도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권리의 실시행위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35. 퇴직 심판관 및 법관의 관련사건에 대한 관여 금지 【계속】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권자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이 퇴직 후 바로 해당 관련 침해소송의 상대방(침해자 측)의 소송 대리를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심결취소소송과 관련 침해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인 제척 내지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재판의 구성을 방해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여 큰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법관, 변호사 등의 직업 윤리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침해소송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특허를 둘러싼 지재분쟁사건 중에서 이들 심판, 재판에 관여한 심판관, 법관이 퇴직한 이후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맡는 사례를 제척 또는 기피사유로 넣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는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변호사 등 법조 관계자의 윤리관 향상을 요청한다.

36. 통상실시권 대항요건의 재검토 【계속】

통상실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 3 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라이선스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라이선서가 해당 특허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당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의 제품에 천 건 이상의 특허권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흔한 작금의 상황에서 그 모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인적 및 비용적 부담이 크다.

이에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통상실시권에 대해 등록없이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른바 당연대항제도로 이행해주시기를 요청한다.

37. 특허출원의 멀티의 멀티클레임 용인 【계속】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하는 데 있어 다른 청구항을 다수 인용한 청구항을 또다시 다수 인용하는 기재(이른바 멀티의 멀티클레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뿐만 아니라 발명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는 표현이 어려워져 다면적이고 망라적인 특허권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본특허청 및 유럽특허청과 같이 멀티의 멀티클레임을 통한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를 용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38.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불복 신청 등의 기본기간의 장기화 【계속】

심사관의 의견서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는 국내외 출원인 불문하고 2 개월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외국출원인은 심사관이 통지하는 거절이유의 내용 등을 번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정기간 내의 대응이 어렵다. 이에 대해 해당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관리인(변리사)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여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기본 기간을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3~4 개월 정도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39. 특허권 존속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기간 가산 【계속】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산입가능한 기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친 기간’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특허청 고시 제 2012-17 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기간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신약의 허가 등을 위한 자료로 참작한 경우라도 해당 산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약 허가에 있어 당국이 참작한 임상시험은 외국에서 실시된 것이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산입 가능한 기간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

40. 침해소송에 관한 법원의 특허권 등 유효 및 무효 판단 【계속】

얼마 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특허가 무효심판으로 인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남용으로 보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무효의 항변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2010 다 95390, 2012 년 1 월 19 일 판결선언)을 내렸다. 한편 이러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특허법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안정된 운용 여부가 우려된다.

이에 해당 판결의 취지를 특허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

41. 예견성 있는 안정적 권리의 부여 【계속】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특허권에 대하여 사후 무효심판으로 인한 무효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높아 안정된 특허제도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하자가 없고 예견성 있는 강력한 권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심사, 심판, 법원의 특허성 등의 판단기준의 통일을 도모해줄 것을 요청한다.

42. 간접침해규정의 확충 【계속】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 등을 양도하는 행위 등은 이른바 간접침해로서 권리침해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한국 특허법은 간접침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 ‘에만’ 사용하는 부품 및 재료 등을 양도하는 행위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부품 및 재료 등이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 ‘에만’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으므로 결국 간접침해 적용이 어려워 특허권의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권리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악의를 가지고(특허권 침해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특허권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양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널리 간접침해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한다.

산업 분야 (신규 8개 항목, 계속 2개 항목)

43. 임대계약 시의 위약금 비율의 확대 【신규】

외투기업을 포함하여 시설대여업을 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객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 위약금 수준이 너무 낮아 대규모 거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관련문건: 약관심사지침 IV-4. 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

위약금의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약관(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은 일반기업에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내리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금융감독원)이나 통신회사(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관련정부기관으로부터의 규제나 강제사항은 없다.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의 수준은 기업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정한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시 바란다.

44. 경제자유구역 확대 【신규】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에 입주/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 및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동해안, 송도, 광양만, 진해, 새만금 등, 지방 도시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서울(및 서울 근교)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아무런 지원도 없다.

현재 국가정책으로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일반기업도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투자유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구역 외에 서울 및 수도권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도록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요망한다.

45. 하도급법 규제강화(신고포상제 도입) 【신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정한 예외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실태조사 시 하도급업체가 법률을 오해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무조건 적법성을 입증하거나 자진 시정한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므로 회사 업무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여타 포상금제도에서 발견되는 ‘직업적 신고자’의 양성과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신고 등 악의적인 고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개선책으로서 ① 해당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 ②추가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회신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하도급업체와 사실확인을 하여 사실이라고 판명되었을 때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4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에 복합기(디지털 복사기)를 추가지정 【신규】

재제조 복합기에 대한 관공서 판매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신품만 구매), 재제조 생산시설 투자 시 발생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세제 지원책도 없다.

정부 차원에서 재제조 복합기(디지털 복사기)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품질인증 품목고시에 신규 추가지정해주기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공동고시품목지정 추가)

복합기(디지털 복사기) 재제조는 품질인증기준이 없어 일부 재생업체가 수리(비정규부품 사용)한 재생품을 재제조품 또는 신품으로 판매하여 품질불량이 확대되어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과 원제조업체로의 클레임으로 연결되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있어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신품과 마찬가지로 복합기 재제조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엄격한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장심사기준과 품질인증 제정을 요망한다. (책정된 품질인증기준은 수입중고기기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함)

4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운영요령에서 정한 면제처리조건 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신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600W 이상의 프린터 안전인증 면제조항이 삭제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운영요령에서 정한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하여 면제 처리가 인정되고 있다. 현행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운영요령에서 프린터의 경우,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에서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일반기업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외부에 위탁했던 대형출력 인쇄업무를 전문 오퍼레이터를 채용 또는 위탁하여 내부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며, 제조업, 전기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환경을 한정 가능한(전문 오퍼레이터를 고용하는 등 사용환경이 한정 가능한)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면제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또는 과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존재했던 600W 이상의 프린터 면제조항을 3,000W 이상의 프린터로 면제 조항을 신규로 제정해주시기 바란다.

48. 전기용품안전인증(KC) 제도 관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신규】

복사기나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의 구조, 사용방법 등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또한, 제조업자가 직접 KC 인증에 준하는 제품시험을 통해서 안전성 확인을 스스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KC)에 대해서 복사기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프린터는 ‘자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재차 한국에서 실시하는 등, 한국에서 상품을 선보일 때 필요 이상의 과부하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복사기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자율 안전확인대상으로, 프린터는 자율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규제완화를 요망한다.

49. 전기제품의 KC 인증 취득 완화【신규】

전기제품이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 인증은 시험소에서 합격한 제품일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품을 해외 공장에서 시험소로 보내고 시험이 끝난 제품을 다시 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 자체의 변경이 아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든 제품에 대해 변경수정신청을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신청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기인증 등으로 전환하는 등 완화를 요망한다.

50. 통관 시 KC 인증 부착유무 확인 강화【신규】

전기제품에 대한 KC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당사는 한국 판매용을 개발하고 인증 취득에도 많은 경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는 통관 시의 KC 인증 취득 유무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KC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타 지역 판매용 동일제품이 병행수입되거나 타 경쟁사의 KC 인증을 받지 않은 동등품이 다수 수입되고 있다.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려면 통관 시 KC 인증 유무 확인을 강화하여 KC 인증 미취득 제품이 통관되지 못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51. K마크, ECO 마크 인증제도의 재검토 【계속/내용변경】

K 마크(또는 Q 마크)는 임의인증제도이면서 공공입찰의 조건이어서 조달기준*과 입찰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가 아니라 필수로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에는 K 마크를 취득한 제품이 거의 없고 표시의무도 없다. 심사절차는 개선되고 있으나 유지를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

한편 ECO 마크도 임의인증제도이지만 공공입찰심사 시의 가산항목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녹색구매 등의 점에서 인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이 광범위하여 기업의 취득유지비용 부담이 크다.

K 마크(Q 마크)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조달기준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공공입찰 조건 상의 기재를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ECO 마크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재검토하여 환경과 관계없는 심사기준을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52. IT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계속/내용변경】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1996 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ITA(정보기술협정) 체결국 간의 ITA 품목 수출입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일부 품목이 과세 대상인 채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터와 같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WTO·WCO 에서는 ITA 적용의 해석을 표명하고 있고 ITA 주요 참여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로젝터를 포함한 모든 IT 제품이 비과세·비관세화되어 있는지 전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비과세·비관세화가 인정된 경우, 품목분류의 재검토와 관세율 수정 및 보정 후 소급적용에 의한 관세환급을 요망한다.

개별요망사항 (신규 6 개 항목)

53. 학원법 규제 완화 【신규】

한국에는 학원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각 교육청 별로 분당 수업료 단가(약 100~300 원/1분)가 제정되어 있다. 규정대로의 수업료 수입만으로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불, 강사 사례비를 충당해서는 품질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학원은 교육용도의 시설에서밖에 개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된다. 이러한 학원법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란다.

54. 일본제품의 수입통관 시 샘플 제출에 관한 개선 【신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하여 수입 로트 별로 샘플 표본검사가 이루어진다. 한번 상자를 개봉하면 그 상자에 포장된 상품은 일반상품으로서 출하할 수 없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에 합격했다는 공적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중복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표본검사는 최초 수입 시에만 실시하고 2 회째 이후로는 간소화할 것과 함께 구미의 일본제품 수입규제를 참고하여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5.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급여정지 및 제외처분 시기의 시정 【신규】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 및 반복 건수 등에 따라 보험급여정지 경고·정지·제외 등의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분을 법원의 1심 판결 후에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에서 급여정지처분을 받은 제품이 항소심·상고심 등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1심 판결에서 최종 판결까지 해당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 산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이 사업상 개선될 가능성도 낮으므로 양자(정부·제약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처분시기를 최종판결 확정 후에 실시하도록 시정해주기 바란다.

56. 희귀의약품의 약가 신청 시 의료경제성 평가자료(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의 생략 【신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는 약가가 신청할 때 의료경제성평가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제’에 속하지 않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의료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고,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약가 신청의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희귀의약품 중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곤란한 약제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이와 더불어 별도의 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57.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의 재검토 【신규】

현 제도상 선발품의 특허 만료와 함께 후발품이 약가 등재된 경우, 선발품의 약가는 인하된다. 더구나 후발품이 승인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발품의 약가는 인하된다. 그러므로 후발품이 약가 등재 후 2년간 보험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허가 철회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하했던 선발품의 약가를 당초의 약가로 회복시켜주기 바란다.

58. 위험분담제도(리스크 웨어링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신규】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효과 및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제약회사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보험약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일부(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질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대상범위를 ‘표준치료법이 없는 의약품’ 및 ‘표준치료법 실패 후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까지 확대해주기 바란다.

건의사항(본문)

1. 노동 분야

건 명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 【계속 / 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p>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 476 호)에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 지불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되어 있어 기업 측은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 왔다.</p> <p>그러나 그 취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여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예시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p> <p>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범위확대 요구에 따른 임금협상의 난항, 과거 미지급 임금의 소급정산 요구 등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많은 기업에서 인건비가 상승할 전망이며 수입악화로 인해 경영환경에 대한 지장, 인원축소 등이 예상된다.</p> <p>또한 법령 해석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가 크게 변동하는 사태는 경영상 증대한 우려사항이므로 일본계 기업의 투자억제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p> <p>※일본의 경우, 노동기준법에서 할증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시행규칙에서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해석은 나올 수 없다.</p>
개선요망	<p>(1)법령 해석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가 증대되는 사태는 문제가 되므로 고용노동부가 과거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운용해 온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취지(상여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법령상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여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p>

	<p>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p> <p>(2)과거의 임금 미지급분 취급에 대해 기업부담의 정도나 노사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통상임금 산정지침대로 대응해 온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귀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 조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2012.9.25, 고용노동부 예규 제 47 호)</p>
<p>비 고</p>	

건 명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폐지 【계속 / 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p>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94 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①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p> <p>SJC 는 매년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노동·노무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그 내용이 합리적인 경우라도 근로자 측에 다소 불리한 경우, 동의절차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어 규정 개정이 어려우며 이것이 회사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여 신속히 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 •정년 연장은 해야만 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조는 계속 반대하면 정년연장만 얻어낼 수 있고 기업의 체력은 약해질 뿐이니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2003 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춘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상한설정(25 일까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추진하고 싶으나 본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p>이번 통상임금 문제에서는 근로자 측에 대한 ‘이익 변경’ 이 이루어지는 한편, 귀 정부가 지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의 개편’ 은 ‘불이익 변경’ 으로 간주되므로, 이익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불이익 변경은 동의규정 외로 간주하는 등 운영지침의 내실화를 기하거나 절차 면에 있어서도 일본처럼 반드시 기득권익과의 비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가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 노동조건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등’ 을 판단할 수 있는 제 3 자, 즉 사법기관(법원-귀 노동위원회)에게 판단을 맡겨 기업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노동조건 및 복무규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망하는 바이다.</p>
개선요망	<p>상기 현황 및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의 2 가지 사항을 요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 폐지 ②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개정, 즉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근로감독관의 심사) 의무, 즉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2 항의 폐지, b. 판단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 94 조
비 고	일본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노사간 협상이 통례이나 반드시 ‘동의’ 를 필요로 하지는 않음(일본 노동기준법 제 90 조, 노동계약법 제 9 조, 제 10 조)

<p>건 명</p>	<p>3. 유급휴가 금전보상 금지 【계속 / 내용변경】</p>
<p>현황 / 문제점</p>	<p>지금까지 실시해온 각종 시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 연차유급휴가 취득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p> <p>유급휴가제도는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휴가를 취득할 권리’이며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취득을 방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급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며 또한 금전보상제도의 폐지/상한설정을 ‘불이익 변경’으로 삼는 것도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p> <p>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금전보상 모두 상한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계 기업에서는 불이익 변경인 점을 이유로 부여·금전보상 모두 상한을 설정하지 못하여 장기근속자의 금전보상일수가 연간 50일에 달해 ‘휴가를 취득할 권리’가 금전적인 기득권화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p> <p>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유급휴가 사용을 자제하는 가치관은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전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관 하에 유급휴가 금전보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유급휴가 취득률 촉진에 있어 명백한 저해요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도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부분적인 것에 그치거나 혹은 사용률이 높은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래의 ‘휴가를 취득할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유급휴가 금전보상제도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개선요망</p>	<p>상기 현황 및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의 3가지 사항을 실시해주시기 바란다.</p> <p>(1)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p> <p>(2) (상기가 어려울 경우) 이하의 항목을 불이익 변경사항에서 제외</p> <p>① 유급휴가 금전보상 폐지</p> <p>② 휴가부여일수 및 금전보상 대상일수의 상한 설정</p> <p>(3)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시책·홍보활동 실시</p> <p>① 설날·추석 이외에 1주일 정도의 연속휴가 사용을 장려</p> <p>② 유급휴가 취득률의 수치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근로기준법 제 1 조, 제 5 조, 제 61 조, 제 94 조 제 1 항</p>
<p>비 고</p>	<p>일본의 경우, 행정해석(1955년 11월 30일 기수*4718호)상, ‘법정일수 이내의 유급휴가 금전보상’은 위법이다. 또한 유급휴가 취득 촉진수단으로 ‘계획연급제도’(노동기준법 제 39조 제 5항)를 제정하여 ‘8월 중 5일간의 여름휴가를 계획연차로 한다’고 정하는 등, 근로자 개인의 계절지정권과 계절변경권을 배제하고 휴가를 취득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p> <p>*기수(基収):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질의에 답해 발하는 통지</p>

<p>건 명</p>	<p>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계속 / 내용변경】</p>
<p>현황 / 문제점</p>	<p>귀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09 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2010 년 33%, 2011 년 34%, 2012 년 33%, 2013 년 32%, 2014년 32%).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주요 원인은 이하의 3가지라고 생각된다.</p> <p>(1) 과도한 정규직 보호 사회환경의 변화가 빠른 현재, 기업은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 하에서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규직 채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p> <p>(2) 짧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사회적 지위와 임금이 낮다는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는 2 년이라는 짧은 고용기간 때문에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단순업무나 단순작업에만 종사하고 있어 시장가치가 낮은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SJC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2 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비정규직을 고용한 회사의 절반가량이 짧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용자는 2 년마다 비정규직의 채용과 교육을 반복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근로자는 애써 익숙해진 직장을 2 년만에 떠나야 하는 것에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용자, 근로자 양측 모두 2 년 이상 비정규직으로서 계속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 장기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있다. 사용자 측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이라면 고용할 수 있다는 경우도 있다.</p> <p>(3)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택 통계청이 발표한 2014 년 3 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9.2%(전년동월과 동일)로 비정규직의 절반 가량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선택했다. 현대사회에서는 근로형태와 근로에 대한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근로자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p>
<p>개선요망</p>	<p>(1)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①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해주시 바란다.</p>

	<p>②전문성이 높은 특정 직종과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2) 상용고용형 파견사업의 법제도화</p> <p>①작년에 귀 정부로부터 법제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의 검토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p> <p>②최근 청년층의 고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청년층에게 안정된 고용조건 하에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미스매치를 방지하고 실업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해당사업의 법제도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비 고</p>	

2. 세무 분야

<p>건 명</p>	<p>5.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 및 관세조사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국세청은 경제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연간 1 만 8 천 건 이하) 및 기간(10~30%)을 단축할 계획이며, 매출 3 천억 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주로 5 년 주기의 정기순환조사로 운영하고 비정기조사(심층세무조사)는 줄일 계획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p> <p>한편 정부는 안전보장 및 복지예산(5 년간 134 조 원) 재원확보 수단의 하나로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인력을 증원(500 명 추가)하여 이전가격 등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 외환거래 및 수출입 통관요건 관련 분야의 비정기조사를 강화하고 있다.</p> <p>때문에 조사대상 기업은 예년에 비해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세금추징을 당하거나 통상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p>
<p>개선요망</p>	<p>세무조사 전에 보다 구체적인 조사목적(항목)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사전 준비가 가능해져 보다 단기간(또는 서면 등)에 조사가 가능해진다.</p> <p>또한 일단 과세한 후에 불만이 있으면 납세자가 불복하라는 자세보다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에게 조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란다. 그에 따라 기업은 보다 엄격하게 법령준수에 근거한 운영이 가능해지고 또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관세청</p> <p><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81 조 제 6 항 국세청 훈령 제 1945 호 ‘조사사무처리규정’</p>
<p>비 고</p>	<p>한국경제신문이 2014 년 1 월에 주요 외국계 기업 26 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이 지난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요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세무조사 압박’ 을 꼽았다.</p>

건 명	6. 최저한세율 인상 억제 【신규】
현황 / 문제점	<p>글로벌화에 따라 각국이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p> <p>한국의 법인세율은 하락하고는 있지만 최저한세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안전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최저한세율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욱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 최저한세율을 높여가게 되면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미래의 위험이 된다.</p>
개선요망	최저한세율의 인상을 억제해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p> <p><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55 조</p>
비 고	

건 명	7.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신규】
현황 / 문제점	<p>국세청은 현재 국외지배주주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3 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2014 년 개정세법에서는 출자금액의 현행 3 배를 2 배로 변경할 계획이다.</p> <p>외국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은 필요한 자금을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배수변경(축소)을 위해 세무상 지급이자 부인이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커진다.</p> <p>한국 진출을 결정한 단계에서는 3 배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2 배가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p> <p>또한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의 과소자본세제의 배수는 3 배인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p>
개선요망	<p>과소자본세제의 배수를 변경하지 말고 3 배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 OECD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독립기업원칙 및 차별금지조항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혹은 배수를 변경한다면 회사가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국세청 국제조세과</p> <p><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5 조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p>
비 고	<p>과소자본세제는 일본에도 같은 세법이 존재(자회사 차입금이 법인출자금액지분의 3 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자본지분의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은 허용하지 않는 규정)하지만 3 배 한도의 차입기준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p>

건 명	8. 로열티에 관한 손금인정 기준 【신규】
현황 / 문제점	<p>로열티의 손금인정 기준은 국제조세조정법을 따르고 있으며 ①사전에 약정이 있을 것 ②로열티의 대상인 역무의 가치가 인정될 것 ③그 가치가 적정할 것 ④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추어져 있을 것에 따라 결정된다.</p> <p>세무조사 시 상기 4 가지 요건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마찰이 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완성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특허권에 근거한 로열티 비용을 한국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소진론을 들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p>
개선요망	<p>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특허 실시(Royalty), 상표사용료를 인정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및 국세청 법인세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p> <p><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특허법 제 2 조(제 3 호), 상표법 제 2 조(제 7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3 조</p>
비 고	

<p>건 명</p>	<p>9. 관세 경정과 수정신고 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기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관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혹은 수입자가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때문에 관세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p> <p>그러나 2013년 7월 1일에 부가가치세법 제 35 조가 개정되면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었다. 즉 세관장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나 수입자가 나중에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경정과 수정신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게 되었다.</p> <p>그러나 실무상 경정이나 수정신고 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관세의 과세가격 및 관세의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가부담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p> <p>관세조사 시 수입재화의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증가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 이전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부담하는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특히 과도한 규제이다.</p>
<p>개선요망</p>	<p>관련법령을 보완하여 개정 전처럼 사유를 불문하고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입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p> <p><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5 조</p>
<p>비 고</p>	<p>일본에는 소비세의 수정신고나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관세의 수정신고 등에 의해 증가한 소비세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소비세법 제30조, 소비세법 기본통달 11-1-1). 즉, 관세의 수정신고 등에 의해 증가한 소비세는 지불한 소비세로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p>

<p>건 명</p>	<p>10.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귀 정부는 일정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 중,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지방세 산출에 있어 ‘인센티브 고려 후의 법인세’ 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방식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산출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 중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p> <p>과거의 법률에 따라 투자하고 일정조건에 해당하여 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금이 감면되어 왔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은 투자 시의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측불가능했던 일이다.</p>
<p>개선요망</p>	<p>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투자가 이루어져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시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53 조 조세특례제한법</p>
<p>비 고</p>	

<p>건 명</p>	<p>11. 외국소재 모회사의 자산총액 산정 시 적용환산율 【계속/내용 변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중소기업의 범위) 제 1 항 2 호 나목과 관련하여, 제 7 조의 2(자산총액) 제 3 항의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되는 외화환산율에 관한 건 【계속】</p>
<p>현황 / 문제점</p>	<p>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중소기업의 범위)의 취지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에 관련한 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특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동하는 외화환산율 기준으로 한국통화로 환산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정된 회사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2009.11.19.부로 ‘직전사업연도말일 현재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적은 것으로 한다’ 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호 나목 후단에 신설되었으나, 불안정 요소는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요청을 해왔습니다. 2014.4.14. 개정, 2015.1.1. 시행예정인 이번 개정에는 '직전 5 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산율을 적용한다' 고 되어, 개정 전에 비하여 오히려 유동적인 요소가 대폭으로 장기화가 되어,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는 외화환산율에 의한 불안정 요소가 5 년 동안 지속하게 되어, 이와 같은 유동적인 불안정 요소가 없는 내국인 중소기업에 비해 외국인 투자 중소기업은 끊임없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해야하는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p>
<p>개선요망</p>	<p>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의 2(자산총액) 제 3 항을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회사 설립등기일의 증가 환율 또는 당해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증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 추후에 증자가 있을 경우에는 증자자금이 은행으로 불입된 날의 증가 환율 또는 당해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증가 환율을 적용하여 기존 자본금과 증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계산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
<p>비 고</p>	<p>2009년 3월 31일부터 요청 시작(KOTRA 협조)</p>

<p>건 명</p>	<p>1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제도의 개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관세법 제38조 4) 【계속/내용변경】</p>
<p>현황 / 문제점</p>	<p>수입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해당조항(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연계 및 조정한다)이 제정되었다. 즉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경정된 경우에 국세를 경정청구하거나 국세의 정상가격이 경정된 경우에 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세조사와 관세심사에서는 관련법규가 반드시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고 수입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양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한쪽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계산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정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 <p>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가 2012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해당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안건이 2~3건 있는데 전부 기각되었다.</p> <p>해당 경정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양 과세당국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계산근거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 결정된 과세방법을 국조법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본 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p> <p>법률상으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환급을 담당하는 양 관청(국세청, 관세청)의 정상가격 계산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p>
<p>개선요망</p>	<p>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의 정상가격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경정된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격조정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령에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로 환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2 관세법 제 38 조의 4</p>
<p>비 고</p>	

<p>건 명</p>	<p>13.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에 관한 과세당국의 승인 절차 신설(국조법 제 14 조 제 3 항, 국조령 제 27 조) 【계속/내용변경】</p>
<p>현황/문제점</p>	<p>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 배(금융업의 경우는 6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p> <p>이것을 이른바 ‘과소자본세제’ 라 하는데, 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통상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차입금인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상기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p> <p>통상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차입금인지 여부를 증명함에 있어 관련시행령에서는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자료 및 비교 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에 관한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관련시행령은 상기 증명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한다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을 뿐, 해당 자료가 제출되었을 시의 과세 당국의 승인의무, 승인절차 및 승인기한에 관한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해당 증명자료 제출이 가진 효력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p> <p>이에 따라 납세자는 현행 관계법령만으로는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자기자본의 3 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는 보수적으로 손금처리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 <p>2013년 건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을 생각하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었지만 관련규정을 제정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p>
<p>개선요망</p>	<p>과세당국(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특례적용처럼 법인이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과세당국의 승인절차 관련규정을 제정해주시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 조</p>
<p>비 고</p>	

<p>건 명</p>	<p>14.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의 생산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취급에 관하여 【계속】</p>
<p>현황/문제점</p>	<p>한국에 거점을 두지 않고 한국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위탁생산된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한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p> <p>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법 제 94 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외국법인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 94 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범위는 각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PE: Permanent Establishment)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PE 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94 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및 기타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반 의무를 지게 된다.</p> <p>즉,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위탁생산된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재고보유대리인(법인세법 시행령 제 133 조 제 1 항 1 호)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되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PE 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및 기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p>
<p>개선요망</p>	<p>상기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장 규정의 단서로서 ‘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관련된 장소에 한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5 항</p>
<p>비 고</p>	

3. 금융 분야

<p>건 명</p>	<p>15. 교육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 도입 및 현물금융상품 거래손익과 금융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허가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현행 교육세법에서는 증권사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거래에서 발생한 각 분기별 파생상품 관련 순거래이익(평가이익 제외)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p> <p>그러나 이러한 분기별 거래이익으로 제한한 현행 교육세 과세 시스템은 당해 포트폴리오 거래와 관련하여 전분기에 기인식되었던 거래손을 이월하거나 다음 분기에 인식될 수 있는 순거래손에 대해서는 당해 분기에 인식한 이익으로 상쇄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교육세는 금융기관에서 인지한 사실상의 순거래이익에 부과되어야 하는 소득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해당 증권사가 인식한 최종 거래손익보다도 훨씬 큰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p> <p>또한 현행의 증권사가 하고 있는 주요 거래의 형태는 현물 금융상품거래와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익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법상에서는 현물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손익과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상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의 포트폴리오 거래의 순거래손익 규모에 비해 과도한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p>
<p>개선요망</p>	<p>전분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결산으로 이월하여 이후의 과세기간의 과세소득과의 상쇄를 가능하게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현행 분기별 과세에서 회계기간별 과세로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사실상 분기별 이월결손금의 일부 상쇄라도 허용해주시 바란다.</p> <p>또한 증권사의 보편적인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거래순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현물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손익과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상쇄를 허용하여 해당 증권사의 사실상 거래이익에 대한 실질과세를 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국세청(NTS) <관련법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p>
<p>비 고</p>	

건 명	16.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규제 완화 【신규】
현황 / 문제점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별 영업용 순자본의 비율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에 대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위임하여 추가규제를 하고 있다.</p> <p>이러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복수의 규제에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를 다각화한 트레이딩 상품의 개발, 특히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반영한 장외파생상품의 개발 및 거래를 활용한 수익창출을 찾아내려는 시장의 니즈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p> <p>또한 2014년 6월 30일부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의무청산이 도입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결제 위험이 상당히 완화되어 사실상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과 같은 거래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개별 추가자본규제는 과도한 규제이다.</p>
개선요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추가규제(금융투자업 규정)를 완화해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금융위원회(FSC)</p> <p><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의 2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감독규정 5-49</p>
비 고	

건 명	17.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폐지 【신규】
현황 / 문제점	<p>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외국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150% 이내이다.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원화자금으로 스와프하는 거래는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중요한 원화자금 조달수단인데 이는 선물환 한도산출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p> <p>또한 외국은행의 원화자금조달의 원천(투자 및 대출의 기초자금)이 되는 외화자금은 대부분을 해외 본·지점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리먼사태 등 과거의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외국은행의 본·지점 차입은 단기적인 투자자금과는 달리 유동성위기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어 왔다.</p> <p>그러므로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라는 본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본 규제의 강화는 외국은행 지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p>
개선요망	향후에도 외국은행이 국내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해주시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외환거래규정 제 2-9 조 제 2 항 제 2 호
비 고	일본에는 이러한 법령·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 명	18. 외환과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신규】
현황 / 문제점	<p>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수요를 확인한 후에 외환과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투자자와 외환과생상품 거래 시의 리스크 헤지비용을 최대 10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p> <p>본 규제가 도입된 2010 년 1 월 이후 은행은 기업투자자와 원화 선물환거래를 체결할 때마다 거래잔고(타행잔고 포함)가 헤지거래 한도범위 내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헤지비용은 충분히 낮으며 실제로 실수요의 100%에 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p> <p>결과적으로 본 규제는 일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투자자(전문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하고 은행에 대해 과도한 확인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본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에게는 과도한 확인부담이다.</p>
개선요망	<p>본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헤지비용 확인대상을 거래거래로 한정하거나 혹은 사전확인이 아니라 사후적이고 정기적인 확인으로 하는 등 운용방법을 완화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금융감독원 <관련법령>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41 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별표 15-2 ‘외환과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p>
비 고	일본에는 이러한 법령·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 명	19.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완화 【신규】
현황 / 문제점	<p>금융기관에의 인터넷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고 금융기관이 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의 규제를 강화하였다.</p> <p>금융기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해지는 정보보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회사만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중소기업이 수탁한 경우 등)가 있다.</p>
개선요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처리를 수탁받은 자가 수탁받은 업무를 제 3 자에게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 조 2 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이 예외로서 인정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재위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망한다. 또한, 예외승인절차의 간소화와 예외승인신청을 업무수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 수탁기업이 ISO27001 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수탁기업의 재량으로 재위탁기업을 선정 가능하도록 현행 금융감독원 규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금융감독위원회</p> <p><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 조(정보처리의 위탁) 금융회사는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회사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한다.</p> <p>...생략...</p> <p>4 제 1 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 3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금융이용자 보호 및 금융감독권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 정보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정보처리위탁에 관한 본 조 제 2 항·제 3 항, 제 5 조, 제 7 조, 제 8 조를 준용한다.</p>
비 고	<p>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정보처리 위탁가능범위에 대한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p> <p><관련 신문기사 LINK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4372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3&aid=0000026959</p>

건 명	20. 설비자금 관련 자기자금 지불에서 외화 대출 실행까지의 기간 【계속】
현황/문제점	<p>외화대출취급지침에 따르면 차주가 이미 자기자금 등으로 사전에 지불한 설비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에 관해서는 사용용도 및 시기가 일치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p> <p>그러나 설비자금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자금으로 처리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설비자금을 위한 외화대출이 허용되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p>
개선요망	<p>자기자금으로 처리했다는 증빙이 확인될 경우는 3개월보다 기간을 연장해 주기 바란다. 또한 대출실행 후 현재는 즉시 송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용도인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일정기간(1개월) 예입하는 것을 용인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은행 <관계법령> 외화대출취급지침 6.실수요 증빙의 인정 범위</p>
비 고	

건 명	21. 국내 외화 실수요를 위한 외화대출의 용인 【계속】
현황/문제점	<p>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정에 따른 제반 거래의 통화를 외화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기업 등에 대한 판매 및 구매 시에도 외화인 경우가 많다.</p> <p>국내에서의 외화 거래를 위해 외화가 필요하게 되어 은행에 차입을 요청했을 때 외국환은행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외화대출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p> <p>관련 조문: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제국장이 정하는 국내 시설자금의 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 2-9 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2. 기타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p><실상> 현재 해외에서의 실수요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외화대출이 가능하다.</p>
개선요망	<p>판매통화가 외화인 외국인투자기업이 환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한국 내 지불도 외화로 하는 경우, 외화가 필요한 실수요가 되므로 한국 내 지불에 대해서도 외화지불 증빙서류를 통해 외화차입을 인정해주기 바란다.</p> <p>구체적으로는 상기 규정 2. 기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항목의 철폐 혹은 개정.</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은행</p> <p><관계법령>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 2-9 조(외화대출 용도제한)</p>
비 고	

건 명	22.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해외송금 보고시스템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은행은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USD 1,000 이상은 송금 목적별로 한국은행과 연결된 보고시스템에 입력해야만 하며,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해외송금 시에는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의 품목코드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p> <p>한편, 연간 USD 50,000,000 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수입승인서를 은행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은행은 한국은행 보고를 위해 고객에게 수입승인서를 요청하고 있다.</p> <p>그러나 송금방식이 수입대금의 사전송금인 경우에는 보고시스템에 수입명세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행 측은 정확한 보고를 대전제로 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송금거래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더라도 수입대금의 사전송금으로 신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p> <p>이럴 경우 한국은행의 보고시스템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송금정보가 입력되어 한국의 통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p>
개선요망	<p>이 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관세청으로부터 들은 후에 연간 USD 50,000,000 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은 해외송금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외환관리규정에 맞추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해외송금에 관해서는 상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은행 관세청 <관계법령> 외환관리규정</p>
비 고	

건 명	23.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 자금조달 관련 규제완화 【계속】
현황/문제점	<p>2011년 8월 1일에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에 따르면, 이 날 이후 각 은행은 외화표시부채의 하루평균잔액에 대해 이하의 높은 비율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매사업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통지되는 금액을 동 5 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미달러화로 납부하도록 되었다(3 월 결산인 일본 은행들은 2012년 8월 말에 첫회 납부기한).</p> <p>-부과요율: 1년 이하:20bp, 1~3년:10bp, 3~5년:5bp, 5년 이상:2bp</p> <p>외국은행 지점의 자금조달은 주로 외화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p> <p>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차입은 그 대부분이 국외 본지점에서 조달한 것이다. 리먼사태 등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지점 차입은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과는 달리 유동성 위기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정적 자금의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까지도 대상에 포함한 부담금 부과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담금에 따른 조달비용의 상승분은 결과적으로 대출대상인 일반기업과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율에 전가되기 쉬워 한국경제 및 산업계 전체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p> <p>또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에도 2007년 8월 이후 외화표시대출 및 외화발행채권 투자에 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외국은행 지점의 비즈니스가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 내 기업의 원활한 외화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p>
개선요망	<p>향후에도 외국은행 지점이 현지 산업계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 요율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경감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p> <p>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정적 자금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에 대한 부담금 경감조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p> <p>외국은행 지점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유연한 금융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은행(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기관)</p> <p><관계법령> 외국환거래법 제 11 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21 조 2~제 21 조 10</p>
비 고	일본에는 이러한 법령·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지식재산 분야

<p>건 명</p>	<p>24. 한국특허청의 정보제공 제도의 시정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1. 한국특허청의 정보제공 제도에 대해 한국특허청은 심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을 위해 심사 당사자가 아닌 제 3 자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일본, 미국, 유럽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일본의 특허시행규칙 제 13 조의 2; 미국의 ‘third party submission’, EPO의 ‘third party observation’ 이 이에 해당) 한국은 해당 제도 운용이 빈번하게 변경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하와 같다. (1) 정보제공이 있었다는 취지는 공개된다. (일본, 미국, 유럽과 동일) (2)이른바 익명으로 제출 가능 (일본, 미국, 유럽도 제출자명을 생략하거나 대리인명으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 (3) 정보제공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만) (4) 정보제공자가 심사관과 면담하여 정보제공에 관한 해명과 특허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출원인이 감지할 수 없는 곳에서 익명의 제 3 자가 심사관에게 ‘특허를 주면 안 된다’ 는 압력을 가하여 특허요건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거나 연이어 제출되는 선행기술문헌으로 인해 거절 이유가 겹치는 경우가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출원인은 반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출원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다.</p>
<p>개선요망</p>	<p>상기 (3), (4)에 관해 출원인이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부여받는 특허제도의 주된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운용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 <관련법령> 한국특허법 제 63 조의 2</p>
<p>비 고</p>	<p>일본에서는 ‘특허 부여 전의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는 특허출원 심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공한 정보에 관한 해명이나 대상출원의 특허 여부에 관한 설명 등을 하고자 면담 등 심사관 및 정보제공자와 연락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eido/s_tokkyo/jyouhou_03.htm) 참조</p>

<p>건 명</p>	<p>25.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Patent linkage)에 관한 약사법의 재검토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1. 2012 년 3 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 와 특허 를 연계 하는 제도(Patent linkage)가 도입되어 한미 FTA가 정한 3년 유예기간으로 인해 일부규정에 대해 2014 년 3 월에 약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 월에 재예고가 있었다.</p> <p>2. 약사법개정법률안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등재의약품)의 특허권자가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후발 약제의 판매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후발 약제의 판매를 제한해야 하게끔 하고 있다.</p> <p>3. 그러나 판매제한 중이라도 후발 약제의 품목허가 취득자는 후발 약제의 약가를 수재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후발 약제 품목허가취득자의 HIRA 에 대한 대응 여부에 따라서는) 특허권이 존속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약가 인하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효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의 후발 약제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p> <p>4. 동일한 등재의약품의 후발 약제라도 결정특허나 제제특허, 용도특허에 대해서는 후발 약제 A 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후발 약제 B 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때문에 식약처장은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된 동일한 의약품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에도 판매제한을 허가해야만 한다.</p>
<p>개선요망</p>	<p>1. 약사법개정법률안 제 50 조의 9 등의 ‘판매제한’ 을 ‘허가정지’(Approval Stays)로 수정해주기 바란다.</p> <p>2. 약사법개정법률안 제 50 조의 9 제 2 항 제 2 호의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된 동일한 의약품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는 삭제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2014 년 7 월에 재입법예고된 약사법개정법률안 제 50 조의 9 등 2014 년 7 월에 재입법예고된 약사법개정법률안 제 50 조의 9 제 2 항 (한미 FTA 가 정한 3 년의 유예기간으로 인해 일부규정은 추후에 입법화할 예정)</p>
<p>비 고</p>	<p>일본에서는 선발의약품을 커버하는 유효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후발 약제가 품목허가되지 않는다.</p>

건 명	26. 후발 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철회 【신규】
현황 / 문제점	<p>1. 2014년 6월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었다.</p> <p>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신약 특허권자의 판매제한 신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이 판매제한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후발 약제의 판매가 제한되면 신약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 후의 특허소송 또는 심판에서 특허무효 또는 비침해 판단이 내려진 경우, 후발 약제의 판매제한이 없다면 인하될 수 있었던 약가의 차액분에 상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을 신약 특허권자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징수하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었다.</p> <p>3. 그러나 관련 약가차액분에 상당하는 지출은 식약처장의 약사법 개정법률안 제 50 조의 9 제 1 항의 행정처분(판매제한)이 원인이며 신약품목허가취득자가 기존의 약가로 신약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상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는 정의 또는 공평의 개념에 반하는 조항이다.</p>
개선요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제 101 조의 2 제 1 항 제 2 호를 삭제해주시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p> <p>2014년 6월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제 101 조의 2 제 1 항 제 2 호</p>
비 고	

<p>건 명</p>	<p>27.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규정의 재검토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1. 2014 년 6 월 개정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가능 횟수에 대해 기존에는 고시를 통해 1 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특허법 89 조 규정으로 개정되었다.</p> <p>2. 그러나 예를 들어 특허권이 ‘유효성분 A 성분을 지닌 진통제’ 이고 ‘유효성분 A 를 지닌 진통용 주사제’ 에 대해 신약허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특허권에 관련된 ‘진통제’ 가운데 ‘주사제’ 에 대해서는 해당 신약 허가로 인해 실시가 가능하나 특허권 권리범위의 잔여부분, 예를 들어 ‘정제’ 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다.</p> <p>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해당 ‘주사제’ 로 받아 ‘정제’ 로 2 번째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정제’ 에 관련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담보되지 않는다.</p> <p>4. 이와 같이 특허권에 대해 그 권리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약허가 등을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특허권에 포함된 잔여부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해당 특허권 전체의 적정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p> <p>5. 신약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연구비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개량된 의약제제나 제 2 의약 용도 등이 각각 신약 허가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해진 특허권 범위에 대해 각각 특허존속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특허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의약품 개발비 투자 또는 제네릭약품의 시장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놓치는 원인이 된다.</p>
<p>개선요망</p>	<p>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해 신약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도 1 회 횟수 제한을 삭제해 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 <관련법령> 한국특허법 89 조</p>
<p>비 고</p>	

건 명	28.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의 적정화 · IMD 폐지 【계속/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1. 개량신약제도의 존재로 인해 한국에서는 특허기간연장 시에 염분이나 에스테르 성분만 다른 사실상 후발 약제인 개량신약만이 시판 가능하다.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에 따라 개량신약을 대상으로 분쟁이 있었던 사건은 적으나 예를 들면 특허법원 제 5 부 판결(2013 허 2828 권리범위확인(특))에 비추어 고려해보면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의 범위가 유효성분 그 자체만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는 선발의약품의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개선요망	1. 연장전의 권리범위에 해당 개량신약이 포함된 경우,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결함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 90 조의 연장등록 출원 시에 유효성분인 염분·에스테르를 제한하지 않는 형태로 출원이 가능토록 하거나, 법원에서 염분·에스테르의 차이가 있는 개량신약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해당되도록 특허법 95 조의 해석을 변경해주시 바란다. 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한국의 개량신약제도(IMD: 염분·에스테르의 차이에 의해 사실상 후발 약제를 별개로 승인하는 제도)를 폐지해주시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특허청, 법원(특허법원) <관계법령> 특허법 제 89 조, 제 90 조, 제 95 조, 약사법
비 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및 유럽에서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유효 성분이 다른 염분 및 에스테르에도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IMD 는 한국의 독자적인 제도다.

건 명	29. Green List 운용 개선 【계속/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p>1. 2012 년 3 월 한미 FTA 의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 와 특허 를 연계 하는 제도 (Patent linkage) 가 도입 되었다. 새로운 제도 하에 공중 이용 이 가능한 의약품 특허 목록 (Green List) 에는 의약품 판매 허가 취득자 가 제공 한 해당 의약품 을 커버 하는 특허 정보 가 등재 되며 KFDS 가 독자적 으로 작성 한 해당 의약품 을 커버 하는 클레임 이 등재 된다. KFDS 가 작성 한 클레임 은 특허 클레임 보다도 대체로 좁은 범위로 작성 되어 있다.</p> <p>2. KFDS 가 독자적 으로 클레임 을 작성 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작성 된 클레임 의 법적 효력 이 불분명 하다. 또한 특허 권자 에 대한 후발 약제 허가 신청자 의 통지 의무 및 후발 약제 의 시판 허가 가 자동적 으로 지연 되는 범위가 KIPO 심사 를 거쳐 등록 된 특허 클레임 범위 에 준한다는 내용 의 입법화 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KFDS 의 독자적 인 클레임 과 등록 특허 클레임 과의 관계 가 불분명 하다.</p> <p>3. KFDS 의 권한 은 의약품 의 유효성 및 안전성 심사 에 한정 되어 있는데 ‘의약품 특허 목록 심사 에서 해당 의약품 허가 를 받은 사항 과 직접 관련 된 특허’ 인지에 대한 요건 을 심사 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를 초월 한다. (약사법 개정 법률안 제 50 조의 5 제 1 항 제 2 호)</p> <p>4. 현행 제도는 ① 등재 특허 가 한정적 이어서 본래 의 권리 범위 에 대한 등재 가 불가능 하다, ② 등재 특허 가 한정적 이기 때문에 사후 에 허가 신청 된 제네릭 약이 특허 권을 침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권자 에게 제대로 통지 되지 않는다, ③ 등재 특허 와 특허 권이 상이 하기 때문에 특허 권에 근거 한 권리 침해 소송 에서 승소 해도 식품 의약품 안전 처에서는 권리 침해 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④ 향후 권리 침해 소송 에서 특허 권이 등재 특허 로 한정 되어 사법 판단 을 받을 우려 가 있다는 문제 들이 있다.</p> <p>KFDS :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IPO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p>
개선요망	<p>1. KFDS 에 클레임 작성 권원이 없고 KFDS 가 작성 한 클레임 에는 법적 효력 이 없으며 특허 권 행사 에 있어서도 KFDS 가 작성 한 클레임 이 특허 등록 클레임 해석 에 어떠한 영향 도 미치지 않고 참작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 해주기 바란다.</p> <p>2. 특허 권자 에 대한 후발 약제 허가 신청자 의 통지 의무 및 후발 약제 시판 허가 가 지연 된 범위가 등록 특허 클레임 범위 에 준한다는 내용 을 입법화 해주기를 바란다.</p> <p>3. 약사법 개정 법률안 제 50 조의 5 제 1 항 제 2 호를 삭제 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계법령 > 약사법 제 31 조(3), (4) 약사법시행규칙 제 24 조(1), 제 30 조의 2, 3 약사법개정법률안 제 50 조의 5 제 1 항 제 2 호 (한미 FTA 가 정한 3 년의 유예기간으로 인해 일부규정은 추후 입법화할 예정)</p>
<p>비 고</p>	<p>일본에서는 해당 의약품을 커버하는 특허정보 목록은 공표되지 않는다.</p>

<p>건 명</p>	<p>30. 침해소송에 따른 입증 책임 균형의 적정화 【계속/내용변경】</p>
<p>현황 / 문제점</p>	<p>1. 특허권 침해사건은 그 특성상 침해품을 특정하는 증거나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피고 측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 특허권자 측이 이를 모두 입증하는 것은 가혹하다.</p> <p>2. 때문에 한국특허법에서도 손해액의 추정, 과실의 추정, 손해 계산에 필요한 문서제출 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입증책임의 완화·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침해행위의 입증, 침해물품 등의 입증 등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원고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이 여전히 크고 나아가서는 지극히 저조한 특허침해 성립률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특허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p> <p>3. 또한, 한국특허법 132 조에서는 손해 계산에 필요한 경우에만 문서제출 명령이 규정되어 있고 기타 침해행위나 침해물품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제출 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한국민사소송법 제 292 조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동 347 조 1항에서 문서제출 명령, 동 4 항 동 344 조에 규정하는 제출 거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344 조에서는 오로지 문서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기 위한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결국 특허권 침해소송이라는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해당 문서제출 명령의 규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p> <p>4. 2013 년도 건의에 대한 답변에 ‘침해행위 입증을 위한 서류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 추진을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일본특허법 104 조의 2 와 같은 피고에게 거증책임을 전환하려는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중이다.</p>
<p>개선요망</p>	<p>1. 피고가 침해행위나 침해물품을 부인할 경우, 피고가 자신의 행위나 물품 등을 입증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증 책임의 균형을 적정화해주시기를 바란다.</p> <p>2. 피고에 대한 침해행위나 침해물품 입증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명령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피고에게 구체적인 형태의 명시 의무를 지우는 등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해주시기를 바란다.</p> <p>3. 또한 문서 제출명령을 거부했을 때, 가령 그 문서가 오로지 해당 문서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는 특허권 침해소송이라는 재판의 성질을 감안하고 적절한 재판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그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가능한 제도로 개정해주시기를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 <관계법령> 한국민사소송법, 한국특허법</p>
<p>비 고</p>	<p>1. 일본에서는 침해행위나 소송액 입증에 관해 피고에게 거증책임을 전환(특허법 104 조의 2)하며 동시에 침해행위 입증에 필요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문서제출 명령 및 해당 제출명령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 인지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규정(동 제 105 조)이 마련되어 있다.</p> <p>2. 또 다른 예로 미국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p>

건 명	31.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계속/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p>1.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비밀유출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p> <p>2. 그러나 실제로는 예를 들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와 같이 한국의 대기업끼리조차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한국특허청,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34.5%에 불과해 영업비밀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p> <p>3. 또 제트로(JETRO) 서울에도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있으며 대한투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p> <p>4. 2014년의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벌칙이 엄중해지고 교육 및 계몽활동도 실시되고 있으나, 올해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법제 정비 및 교육·계몽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p>
개선요망	<p>1.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을 통한 배상액의 적정화 등으로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p> <p>2. 또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 계몽을 강화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지킨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타사의 영업비밀도 준수해야한다는 기업의식을 조성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p>
비 고	

건 명	32. 특허법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p>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와 관련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p> <p>2. 그러나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인해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 등이 일반화된 작금,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유통·판매 등은 기록매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도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3. 이에 관해 한국특허청은 2013년도 건의사항 답변을 통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14년 6월에 한 번 개정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재차 변경을 실시함으로써 결국 실질적인 변경은 없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로 개정되지 않았다.</p> <p>4. 한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세계적인 네트워크 사회인만큼 이러한 문제는 한국 기업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제도의 개정은 지재선진국으로서 위조상품을 배척하고 한국사회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p>
개선요망	1.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물품으로서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기에 입법화 및 심사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한국특허법 제 2 조, 한국심사지침서</p>
비 고	일본 및 유럽특허청에는 이와 같은 청구항 표기가 허용되어 있다.

<p>건 명</p>	<p>33.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적정화 【계속/내용변경】</p>
<p>현황 / 문제점</p>	<p>1. 한국특허법 등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추정규정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정규정이 도입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p> <p>2. 그러나 실제로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 권리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또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극히 적은 금액이어서 실제 라이선스료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무효심판에서 권리가 무효화되는 비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상황이다.</p> <p>3. 때문에 권리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권리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p> <p>4. 또한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는 침해자 측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특허법 132 조에서는 침해 행위에 따른 침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명령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민사소송법 제 344 조, 제 347 조에서는 오로지 문서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기 위한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등, 결국 특허침해소송이라는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볼 때 해당문서제출 명령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p>
<p>개선요망</p>	<p>1. 손해배상액인정의 적정화와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주기 바란다.</p> <p>2. 또한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출 거부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법원이 판단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한국민사소송법, 한국특허법 제 128 조, 제 130 조, 제 132 조 등</p>
<p>비 고</p>	<p>1. 일본에서는 문서제출 명령 거부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가 있다(특허법 제 105 조). 또한 손해금액의 입증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제 105 조의 3).</p> <p>2.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p> <p>3. 그 외에도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유사한 권리를 두고 분쟁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판결을 참고로 들자면 한국지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애플</p>

	<p>측 약 4,000 만 원, 삼성전자 측 약 2,500 만 원이었는데 미국지방법원의 배심원평결에서는 당초 삼성전자 측 약 10 억 5,000 만 달러(약 1 조 1,550 억 원), 추후 감액되었다고는 하나 약 4 억 5,000 만 달러였다.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손해배상액수가 적다는 것이 확연하다.</p>
--	---

건 명	34. 특허법에 따른 수출보호 【계속】
현황 / 문제점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수출을 실시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특허법에서만 그 실시행위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따라서 특허권침해에 대해 특허법에 기초한 수출금지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개선요망	특허법에서도 다른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실시행위로 규정해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한국특허청 <관계법령> 특허법 제2조
비 고	일본에서는 수출이 발명의 실시행위로서 보호되고 있다.

건 명	35. 퇴직심판관 및 법관의 관련사건 관여 금지 【계속】
현황 / 문제점	<p>1.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권자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법관이 퇴임 후 즉시 해당관련 침해소송의 상대방(침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p> <p>2. 심결취소소송 및 관련 침해소송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며 이러한 행위는 제척 내지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일지 모르나, 관련사건에서 전술한 것과 같은 대응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재판의 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지극히 불신감을 품게 되고 법관이나 변호사 등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p>
개선요망	<p>1.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침해소송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 분쟁사건으로 보고 이들 심판 및 판결에 관여한 심판관이 퇴직 후 해당사건의 소송대리가 되는 것이 제척 내지는 기피사유가 되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p> <p>2. 만약 그것이 어려운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심결·판결을 내린 심판관·법관이 관련된 소송의 상대측 대리인이 되는 것은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윤리관을 향상시킬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대법원,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한국민사소송법, 한국특허법</p>
비 고	

건 명	36. 통상실시권 대항요건의 재검토 【계속】
현황 / 문제점	<p>1. 통상실시권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권을 나중에 취득한 자(전득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p> <p>2. 그러나 오픈 이노베이션화로 인해 하나의 제품에 1,000 건 이상에 이르는 특허권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어 이 모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한편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권을 나중에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내 비즈니스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p>
개선요망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특허권을 나중에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발생하는 소위 당연 대항제도로 이행해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한국특허법 제118조</p>
비 고	<p>1. 주요국 대부분은 통상실시권에 대한 해당 대항요건은 당연 대항이다</p> <p>2. 또 일본에서도 해당 당연 대항요건으로 이행하고 있다.</p>

건 명	37. 특허출원의 멀티의 멀티클레임(다중종속항) 용인 【계속】
현황 / 문제점	<p>1. 현재 한국에서는 다중 인용한 다른 종속항 등을 거듭 다중 인용한 종속항(소위 멀티의 멀티클레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p> <p><멀티의 멀티클레임의 예></p> <p>청구항 1 A를 가진 장치</p> <p>청구항 2 또한 B를 가진 청구항 1에 기재된 장치</p> <p>청구항 3 또한 C를 가진 청구항 1 또는 2에 기재된 장치</p> <p>청구항 4 또한 D를 가진 청구항 1~3 중 하나에 기재된 장치</p> <p>청구항 5 또한 E를 가진 청구항 1~4 중 하나에 기재된 장치</p> <p>2. 이 때문에 발명의 다면적인 보호관점에서 볼 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p>
개선요망	<p>1. 소위 멀티의 멀티클레임 표현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p> <p>2. 본 요망에 대해서 한국특허청은 2012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심사관, 법원, 제3자 등이 발명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국제적 조화를 고려한 장기검토를 하겠다고 답신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청구항의 표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럽 등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p> <p>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p> <p>한국특허법 제42조 8항, 한국특허법 시행령 제5조</p>
비 고	일본 및 유럽특허청에서는 이와 같은 청구항의 표기가 허용되고 있다.

<p>건 명</p>	<p>38.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 불복신청 등의 기본기간 장기화 【계속】</p>
<p>현황 / 문제점</p>	<p>1.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응답이 가능한 기간은 국내외 출원인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2개월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2. 그러나 외국출원인은 심사관이 통지하는 거절이유의 내용이나 인용된 한국어 문헌의 번역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정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3. 또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 재심사 등의 불복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30일간이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4. 한편, 예를 들면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답변의 기본기간은 일본 3개월, 미국 3개월, 유럽 4개월, 중국 4개월, 대만 3개월 등으로 외국출원인에 대한 한국의 기본기간은 명백히 짧다.</p>
<p>개선요망</p>	<p>1.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한 기간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사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기간 자체를 주요국 등과 마찬가지로 3~4개월로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심판청구, 재심사청구) 기간도 마찬가지로 장기화해주기 바란다. 2. 또 지정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 기간연장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정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해주기 바란다. 3. 2012년도 건의에서 해당 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외국출원인은 소위 특허관리인(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그 절차나 수수료 등이 필요하므로 기본기간 자체를 장기화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 <관계법령> 한국특허법 등</p>
<p>비 고</p>	<p>1. 일본에서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이 가능한 기간은 외국출원인에 대해서는 3개월이며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이다. 2. 또 기타 주요국가 등도 전술한 바와 같이 3~4개월이다</p>

건 명	39.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기간 가산【계속】
현황 / 문제점	<p>1. 신약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특허권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특허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필요로 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특허청 고시 제2012-17호)을 해당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다.</p> <p>2. 때문에 한국 내 신약의 허가 등의 절차에서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결과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제출하여 MFDS가 해당 신약의 허가 등을 위해 해당자료를 참작한 경우라도 해당 외국에서의 임상기간은 신약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p>
개선요망	1. 신약의 허가절차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MFDS가 신약허가를 위해 참작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실시된 것이라도 그 임상시험기간을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산정에 가산해주기를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한국특허법 제92조</p>
비 고	<p>일본에서는 국내 신약허가 등의 처분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상시험이고, 행정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 해당 처분을 받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기간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산입시키고 있다.</p> <p>또한 미국에서도 외국임상시험기간을 산입하고 있다. 이하의 웹페이지 참조.</p> <p>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753.html</p> <p>[상기 웹페이지에서 일부 발췌:] For instance, when the clinical trials are conduc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 applicant should include an explanation as to why the date claimed is the date on which such clinical investigations had commenced.</p>

건 명	40. 침해소송에 관한 법원의 특허권 등 유효·무효판단 【계속】
현황 / 문제점	<p>1. 얼마전 한국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심판으로 인해 무효화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해 심리·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무효 항변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2010 다 95390, 2012년 1월 19일 판결선고)을 하였다.</p> <p>2. 한편 이렇듯 중요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특허법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이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p>
개선요망	<p>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를 존중하고 동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침해소송에서 법원에 의한 특허 등의 유효·무효판단(무효항변)을 제도화해주시기를 요망한다.</p> <p>2. 이에 대해 한국특허청은 2012년도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침해소송 법원의 관할집중 및 기술판단체계의 정비 등 선결문제를 해결한 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판결인 이상 조기에 입법화하여 안정화시켜줄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한국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특허법 제104조의 3에 의거하여 침해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어 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p>

건 명	41. 예견성 있는 안정적 권리의 부여 【계속】
현황 / 문제점	1.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권리가 부여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율이 약 60% 이상으로 높아 안정적인 특허제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또 이와 같이 특허권이 불안정한 것도 한 요인이 되어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도 20% 정도에 그치는 등 특허권의 실효적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선요망	1. 권리자의 승소율 향상 및 무효심판의 무효화율 감소를 위해 심사, 심판, 권리행사에 이르기까지 하자없이 예견성 있는 강력한 권리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사, 심판, 법원에서 특허성 등의 판단기준을 통일해 주기 바란다. 2. 이에 대해 한국특허청은 2012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심판원과 법원과의 특허성 판단기준 통일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성과가 실무에 피드백되기를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대법원, 한국특허청 <관계법령> 한국특허법
비 고	일본의 경우 무효심판의 무효율은 약 30% 대이며 미국특허법 제282조에는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추정하는 소위 유효 추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일단 부여된 특허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운용되고 있다.

건 명	42. 간접침해규정의 확충 【계속】
현황 / 문제점	<p>1. 한국의 특허법 등은 특허권 등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침해자에게 공급하는 예비적 행위 등을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부품이나 재료에 대해 해당 특허발명 관련 물품의 생산 ‘에만’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p> <p>2. 그리고 침해소송 등에서 해당 ‘에만’ 에 관한 요건이 엄격히 해석되고 있어 간접침해의 적용이 어렵기에 특허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p>
개선요망	1. 권리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악의(특허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를 갖고 특허권 등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까지 간접침해의 성립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한국특허청</p> <p><관계법령> 한국특허법 제127조</p>
비 고	<p>1. 일본에서는 특허법 제101조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일본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제외한다)이자 그 발명에 의한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대하여 그 발명이 특허발명이라는 점 및 그 물품이 그 발명 실시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직업적으로 그 생산·양도 등 혹은 수입·양도 등의 신청을 하는 행위’ 를 간접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악의를 갖고 특허권 등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등을 특허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p> <p>2. 그 외에 독일 특허법 제10조, 미국특허법 제271조(c) 등이 있다.</p>

5. 산업 분야

<p>건 명</p>	<p>43. 임대계약시의 위약금비율의 확대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1. 외투기업을 포함하여 시설대여업을 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객이 임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수준이 너무 낮아 대규모 거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관련지침: 약관심사지침 IV-4. 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에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p> <p>2. 위약금의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약관(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은 일반기업에 ‘권장 사항’ 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내리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p>
<p>개선요망</p>	<p>위와 같은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금융감독원이 감독)이나 통신회사(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에 대하여 관련정부기관으로부터의 규제나 강제사항이 없다.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의 수준은 기업과 소비자가 자유로이 정한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 민법 제 398 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8 조 약관심사지침 IV-4 나(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158 호)</p>
<p>비 고</p>	<p>외국에서는 위약금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p>

건 명	44.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신규】
현황 / 문제점	<p>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에 입주/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 등,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동해안, 송도, 광양만, 진해, 새만금 등, 지방 도시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서울(및 서울 근교)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p> <p>현재 국가정책으로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일반기업도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투자유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p>
개선요망	현재 운영 중인 8 개 구역 외에 서울 및 수도권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p> <p><관련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p>
비 고	<p>일본의 경우 2011 년 6 월 ‘일본재흥전략’ 을 마련하고, 대도시(도쿄도, 오사카부/시, 아이치현(나고야))를 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완화와 세제우대 등을 통해 국내외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고 대도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재생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p> <p>일본 국가전략특별구역법(2013 년 법률 제 107 호)</p>

<p>건 명</p>	<p>45. 하도급법 규제강화(신고포상제 도입)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1.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 하에 4 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 외)에 대하여 최고 5 억 원까지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4 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p> <p>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해마다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정한 예외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실태조사 시 하도급업체가 법률을 오해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무조건 적법성을 입증하거나 자진 시정한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하므로, 회사 업무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p> <p>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여타 포상금제도에서 발견되는 ‘직업적 신고자’의 양성 및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신고 등 악의적인 고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p>
<p>개선요망</p>	<p>1. 해당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요망한다.</p> <p>2. 상기 사항에 추가하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하도급업체로부터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회신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하도급업체와 사실확인을 한 후,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p> <p><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제 4 항 및 제 5 항 (입법예고안)</p>
<p>비 고</p>	

건 명	4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에 복합기(디지털 복사기)를 추가지정 【신규】
현황 / 문제점	<p>1. 재제조 복합기에 대한 관공서 판매가 현재 인정되지 않고(신품만 구매), 재제조 생산시설 투자 시 발생하는 막대한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세제 지원책이 없다.</p> <p>2. 복합기(디지털 복사기) 재제조의 품질인증기준이 없어 일부 재생업자가 수리(비정규부품 사용)한 재생품을 재제조품 또는 신품으로 판매하여 품질불량이 확대되어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과 원제조업체에의 클레임으로 연결되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있어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신품과 동일수준의 복합기 재제조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p>
개선요망	<p>1. 재제조 복합기(디지털 복사기)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품질인증 품목고시에 추가 지정해주기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공동고시품목에 지정 추가)</p> <p>2. 소비자에 있어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신품과 동일수준의 복합기 재제조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해주기 바란다. (엄격한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장심사기준과 품질인증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제정된 품질인증기준은 수입중고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해주기 바란다.</p> <p>3. 건전한 재제조업을 가속화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공헌하고자 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p> <p>1.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p> <p><관련법령></p> <p>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재제조 품목고시)</p>
비 고	일본의 경우 모든 원제조업체는 자원 재활용·자원 순환정책에 의거해서 임대기에 대한 재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임대기에 대하여 재제조를 통하여 재사용을 보편적으로 추진해서 자원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p>건 명</p>	<p>4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운영요령에서 정한 면제처리조건 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600W 이상의 프린터 안전인증 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운영요령에서 정한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하여 면제처리가 인정되고 있다.</p> <p>현행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운영요령에서 프린터의 경우에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에서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p>
<p>개선요망</p>	<p>일반기업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외부에 위탁했던 대형출력 인쇄업무를 전문 오퍼레이터를 채용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내부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면제범위 확대를 요망한다. 즉, 운영요령 별표 5의 제 5호에서는 산업용(제조업, 전기업)만이 아니라 기타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용품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도 있으므로 특정사업에서 사용되는 것도 면제해 주기 바란다.</p> <p>예를 들면, 사용환경을 한정 가능한(전문 오퍼레이터를 고용하는 등, 사용환경을 한정 가능한 경우)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면제해 주기 바란다.</p> <p>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인증 대상제품으로서 프린터를 3000W 이하의 프린터(일반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로 한정해 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과</p> <p><관련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운영요령</p>
<p>비 고</p>	

건 명	48. 전기용품안전인증(KC) 제도 관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신규】
현황 / 문제점	복사기나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의 구조, 사용방법 등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또한, 제조업자가 직접 KC 인증에 준하는 제품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 확인을 스스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KC)에 대해서 복사기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프린터는 ‘자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차 같은 시험을 한국에서 실시하는 등, 한국에서 상품을 선보일 때 필요 이상의 과부하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요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복사기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자율 안전확인 대상으로, 프린터는 자율 안전확인 대상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규제완화를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관련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기용품안전관리 운영요령
비 고	일본의 경우, 사무기기(복사기&프린터 등) 제조자가 제조물관리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부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현재, 사무기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큰 문제가 없으므로, 복사기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자율 안전확인대상으로, 프린터는 자율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건 명	49. 전기제품의 KC 인증 취득 완화 【신규】
현황 / 문제점	<p>전기제품은 KC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 시험기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대상제품) 또는 지정시험기관(전파법 대상제품)에서 합격한 제품만이 KC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p> <p>이러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KC 에 상응하는 인증기준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품을 해외 공장에서 한국의 시험기관으로 보냈다가 시험이 끝나면 다시 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이 필요해진다.</p> <p>또한 전기제품에 대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p>
개선요망	<p>1. KC 에 상응하는 인증기준을 취득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취득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주기 바란다.</p> <p>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변경의 경우*1 에는 기업책임으로 직접 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고하고 확인 받음으로써 안전인증기관의 시험을 면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p> <p>*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변경신청의 내용이 <u>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확인기관이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국립전파연구원(RRA), 국가기술표준원(KATS)</p> <p><관련법령> 전파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p>
비 고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은 기업책임으로써 이러한 수입규제가 없다.

건 명	(49.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50. 통관 시 KC 인증 부착유무 확인 강화 【신규】
현황 / 문제점	전기제품에 대한 KC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회사가 한국 판매용 제품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KC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통관 시 관련당국은 KC 인증 취득유무의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병행수입되는 동일제품 중, KC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이 다수 수입되고 있다.
개선요망	귀 정부는 통관 시의 KC 인증 미취득 제품 및 KC 인증 비표시 제품 단속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기 검토 및 강화를 요망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KOTRA, 관세청, 한국제품안전협회(KPSA), 중앙전과관리소(CRMO) <관련법령> 전과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비 고	

<p>건 명</p>	<p>51. K마크, ECO마크 인증제도의 재검토 【계속/내용변경】</p>
<p>현황 / 문제점</p>	<p>K마크(또는 Q마크)는 임의인증제도이면서 공공입찰의 조건이어서 조달기준*과 공공입찰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가 아니라 필수로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에는 K마크를 취득한 제품이 거의 없고 표시의무도 없다. 또한 심사절차는 개선되고 있으나 유지를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p> <p>한편 ECO마크도 임의인증제도이지만 공공입찰심사 시의 가산항목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녹색구매 등의 점에서 인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이 광범위하여 기업의 취득유지비용 부담이 크다.</p> <p>*안전행정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제2장 1.기본규격 바. 공산품 품질보증’</p>
<p>개선요망</p>	<p>1. K 마크(Q 마크)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메리트가 적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조달기준에서 삭제하여 공공입찰조건에 대한 기재를 중지해주시기 바란다.</p> <p>2. ECO 마크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재검토하여 일본의 에코마크에서도 대상이 아닌 프로젝터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경과 관계없는 심사기준(휘도, 대비 등)을 수정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교육부(MOE),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안전행정부(국민안전처)</p>
<p>비 고</p>	

건 명	52. IT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면제 【계속/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p>한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ITA(정보기술협정) 체결국 간의 ITA 품목 수출입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일부 품목이 과세대상인 채로 남아 있다.</p> <p>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미 비과세·비관세화를 실시 중이라는 답신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프로젝터의 경우 ITA 【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96년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선언)】의 첨부문서 B에 「Projection type flat panel display units used with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which can display digital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central processing unit.」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과의 대상이다.</p> <p>WTO·WCO에서는 프로젝터와 같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ITA 적용의 해석을 표명하고 있으며 ITA 주요 참여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p>
개선요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터를 포함한 모든 IT 제품이 비과세·비관세화되어 있는지 전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2. 비과세·비관세화가 인정된 경우, 품목분류의 재검토와 관세율 수정, 보정 후 소급적용에 의한 관세환급을 해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p> <p><관련법령> 관세법</p>
비 고	

6. 개별요망사항

<p>건 명</p>	<p>53. 학원법 규제 완화 【신규】</p>
<p>현황 / 문제점</p>	<p>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각종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교과과정 학원의 경우, 각 교육청 별로 분당 수업료 단가(약 100~300 원/1분)가 제정되어 있다. 규정대로의 수업료 수입만으로는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불, 강사사례비를 충당하기 빠듯하여 충분한 품질의 교육을 유지하기가 어렵다.</p> <p>최근 서울 강남교육청이 관내의 모든 학원을 조사하여 상기 수업료 상한을 초과한 학원에 대해 수업료 인하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은 ‘인하 명령은 부당하며 수업료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p> <p>학원은 교육용도 시설에서밖에 개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원 내에 다른 시설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학원 내에서 교과과정에 필요한 것을 판매할 수 없다.</p>
<p>개선요망</p>	<p>1.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의 무리한 수업료 조정은 중지해주시기 바란다.</p> <p>2. 판매시설에서도 학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교육청</p> <p><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p>비 고</p>	

건 명	54. 일본제품의 수입통관 시 샘플제출에 관한 개선 【신규】
현황 /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하여 수입 로트별로 샘플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한번 상자를 개봉하면 그 상자에 포장된 상품은 일반상품으로서 출하할 수 없다. 2.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에 합격했다는 공적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중복확인이다.
개선요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 수입인 경우에는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2 회재이후의 검사에 대해서는 간소화해주시기 바란다. (과거에 일본의 공적 기관과 한국의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등에 한하여 검사해주시기 바란다.) 2. 일본제품에 대한 구미의 현재 수입규제를 참고하여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에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비 고	

건 명	55.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급여정지 및 제외처분 시기의 시정 【신규】
현황 / 문제점	<p>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4년 7월 2일 시행)에 의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 및 반복 회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정지 및 제외처분을 받는다.</p> <p>보건복지부는 벌금 이상의 형이 언도될 경우(1심), 그에 따라 즉시 급여정지, 제외처분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심 판결에서 해당 품목의 급여정지(또는 삭제) 처분을 받은 제약회사가 항소심 또는 상고심 등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로서는 1심 판결에서 최종판결까지의 기간 동안의 급여정지 또는 제외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급여정지 및 제외처분에 의해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의 경우 사업상 개선될 가능성도 낮으므로 양자(정부·제약회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p>
개선요망	<p>급여정지 및 제외처분 후에 행정소송 및 형사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경우, 제약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급여정지 및 제외처분을 최종판결 확정 후에 실시하도록 시정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협회 등</p> <p><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70 조의 2, 별표 4 의 2, 기타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행동 강령 등과도 관련된다.</p>
비 고	상기 개선요청은 한국제약협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건 명	56. 희귀의약품의 약가 신청 시 의료경제성 평가자료(비용효과성자료) 제출의 생략 【신규】
현황 / 문제점	<p>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약가 신청 시 경제성 평가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대상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다.</p> <p>대상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제가 아닌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도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해당 자료 제출이 약가 신청의 장애가 되고 있다.</p>
개선요망	대상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제가 아니더라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약제일 경우에는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관련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비 고	

건 명	57.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의 재검토 【신규】
현황 / 문제점	<p>선발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후발품의 약가가 등재된 경우, 선발품의 약가는 인하된다. 그러나 후발품이 승인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발품의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p>
개선요망	<p>후발품의 약가 등재 후 2 년간 보험청구가 없는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 조 제 4 항 제 8 호)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하되었던 선발품의 약가를 당초의 약가로 회복시켜주기 바란다.</p> <p>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고시(약제의 결정과 조정의 기준)의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의 제 3 호(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 및 조정기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기 바란다.</p> <p>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에 후속하여 결정 신청된 동일제제가 <삭제>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에 후속하여 결정 신청된 제품이 <u>판매할 의사를 재 표명한 경우</u>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되, <u>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 적용에 의해 인하되었던 상한금액을 회복한다.</u></p>
관련 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보건복지부</p> <p><관련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 조 및 제 14 조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의 기준 <p>[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 3 호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 및 조정 기준(발체)</p> <p>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에 후속하여 결정 신청된 동일제제가 <u>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의 특허를 이유로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u>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등재되어 있는 제품에 후속하여 결정 신청된 제품이 <u>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거나 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u>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되, <u>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제품이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 적용에 의해 인하되었던 상한금액을 회복한다.</u> 이 때,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의 범위 및 상한금액 회복의 세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비 고	

건 명	58. 위험분담제도(리스크 셰어링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신규】
현황 / 문제점	위험분담제(리스크 셰어링)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의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식약처에서 지정한 희귀의약품이더라도 보건복지부 고시(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 고시)에 명시된 질환(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의 치료제만 적용된다.
개선요망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을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뿐만 아니라 ①표준치료법이 없는 의약품, ②표준치료법 실패 후에 사용하는 의약품까지 확대해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법령> ·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제 12 조의 3 · 위험분담제 약가협상의 세부운영지침 제 4 조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 7 조 2 항 및 3 항
비 고	